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지)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 제외대상 : 1.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농지 및 초지 면적이 각각 1천㎡미만인 자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 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것에 한함)

*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지급단가

- 농지 55만원/ha
- 초지 30만원/ha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 밭(과수원포함) 4ha, 논·초지 각각 30ha
- 농업법인 : 밭(과수원포함) 10ha, 논·초지 각각 50ha

등록신청서 제출

- 1)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중 하나)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명)

*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2017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연간 직불금 지급내역을 우편으로 제공해드릴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2017년 직불금



직불금 신청기간

2017. 2. 1. ~ 4. 28.

(논이모작 직불금 2.1.~3.10.)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콜센터 1644-8778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제외대상 : 1.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

대상농지 농지법상 "농지"를 말함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는 농지 (변동직불금은 실제 벼재배농지)

지급단가

- 쌀고정직불금 : 평균 100만원/ha
- 쌀변동직불금 : 수확기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1월)에 따라 결정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 30ha, 농업법인 : 50ha * 단, 농업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400ha

등록신청서 제출

1)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제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② ①이외의 자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중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2017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제외대상 : 1.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논이모작)이 1천㎡미만인 자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

대상농지 농지법상 "농지"를 말함

- **밭고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 신청 연도에는 휴경 포함)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 자경농지를 식량·사료작물 등의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사용대)가 가능하며, 실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평균 45만원/ha
- *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 11월)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ha
-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지급상한면적

- 밭고정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논이모작(사료·식량작물)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등록신청서 제출

1) 2016년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중 하나)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2017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